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 번호	15419
----------	-------

제안연월일 : 2025. 12. .

제안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1. 대안의 제안경위

의안명	대표발의자	발의일자	심사경과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2204931호)	이상휘의원	2024.10.28.	제419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4.12.13.) 상정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원회 회부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2205067호)	이양수의원	2024.10.30.	제419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4.12.13.) 상정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원회 회부

가.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3차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2025. 11. 27.)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나.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 12. 1.)에서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해양

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수산부령으로 연근해어업 종류별·규모별 폐업지원금 기준액을 정하고,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에서 감척 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자가 지급받는 폐업지원금이 기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 신설 등).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1조에 따라 어선·어구 감척 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자가 제1항에 따라 지급받는 폐업지원금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연근해어업의 종류별·규모별 폐업지원금 기준액 미만인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어업자에 대한 지원) ① (생 략) 1. · 2. (생 략) <u>&lt;신 설&gt;</u>	제13조(어업자에 대한 지원) ①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②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도 지사는 제11조에 따라 어선· 어구 갑척 대상자로 선정된 어 업자가 제1항에 따라 지급받는 폐업지원금이 해양수산부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른 연근해어 업의 종류별·규모별 폐업지원 금 기준액 미만인 경우 그 차 액을 지원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③ ~ ⑤ (현행 제2항부터 제4 항까지와 같음)
⑤ 제4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⑥ 제5항----- ----- -----.